

기업간 전자상거래로의 시장환경 변화와 기업의 활로 모색

최원익*

The Change of Market Environment toward B-to-B E-Commerce and Groping Ways out of the Difficulties of Companies

Choi, Won Ick

Abstract

The world is now meeting the era of e-commerce by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fast increase of use of internet. So, Korean government prepared "the colligation plan for electronic commerce activating" and WTO decides to prolong no custom on e-commerce till November 2001 when the four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holds a meeting. OECD discussed the constru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global dimension at the Global Forum on January 2001 and reached to research the social influence of B-to-B e-commerce and to pursue the acceleration of e-commerce.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enacted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in order to activate e-commerce, and Bolero.net serves electronic Bill of Lading to facilitate cyber tra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onfrontation to the thes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 to Korean enterprises.

Off-line enterprises should move fast to e-commerce on the condition that the existing trading at the original markets runs parallel with e-commerce. If needed, off-line enterprises should consider M&A with existing on-line firms. Also, off-line firms make use of Bolero system so that they can carry through paperless trade which means the achievement of efficiency in trading.

On-line enterprises should advertise in the form of banner by combination of push and pull styles. B-to-B e-commerce firms should not depend on only the commissions, but they should create characteristic earnings by their peculiar services.

*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1. 서론

인터넷의 출현은 전 세계의 가정, 기업 및 정부기관의 행동양식을 일거에 바꾸어 놓았음은 물론 지구촌에서 전자상거래(e-commerce)가 활성화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다. 전자상거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분류의 기술적 모호성 등도 있고 해서 전자상거래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전자상거래를 “인터넷과 같은 공개된 표준 절차를 통해 설립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은 “전자상거래란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라고 정의한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라고 정의하는 등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미국조사기관 IDC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도에 전세계의 전자상거래 실적이 57조 558억 원이고, 이중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52조 3276 억원으로 총거래액의 90.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에는 5조 달러가 되고, 그중 86%가 기업간 전자상거래액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거래는 전자상거래 형태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전자상거래에 관한 많은 연구도 있어 왔다. 이강민(2001)은 인터넷을 이용한 지역산품수출을 위한 정부의 대

응방안을, 설영기, 박현희(2000)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WTO뉴라운드의 동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고, 신일순, 김춘아, 정부연, 이정성(1999)은 전자상거래가 초래할 산업별 가치체인(value chain)의 변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제고 방안을 제시했으며, 신일순외 5인(1998)과 조태식(1999)은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자상거래가 기업 대 소비자(B-to-C)간의 거래에서 기업 대 기업(B-to-B)간 거래로 그 형태가 바뀌어 가고, 전세계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온 OECD가 2001년 Global Forum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다 확실한 범세계적 차원의 제반 규정을 정리하고 향후 기업간 전자상거래(B-to-B e-commerce)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을 재 정비하는 등 주변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Bolero System의 등장으로 사이버무역이 용이해지는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 개별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의 환경적 변화

2.1 국내환경변화

앞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¹⁾의 의미가 광범

<표 1>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

(단위 : 억원)

부 문 별	1996	1997	1998	1999	2000
기업과 소비자간	14(9.1)	63(22.6)	150(20.3)	2,464(2.43)	11,398(6.1)
기업과 기업간	140(90.9)	216(77.4)	590(79.7)	98,617(97)	175,208(93)
계	154(100.0)	279(100.0)	740(100.0)	101,081(100.0)	186,606(100)

주) : 1) EDI 매출액 기준 2) ()내는 비중, % 3) 2000년은 추정치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해서 사실 한국에서 전자상거래의 효시는 1987년에 포항제철이 철강 관련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사설통신망을 통해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1996년말 인터파크, 롯데백화점 등이 쇼핑몰 형태로 서비스를 시작해서 최근에는 참여업체나 시장규모가 날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어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규모는 1996년도에 154억에서 2000년도에는 17조5208억이 될 정도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1998년중 국내 총생산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0.06%밖에 안되어 0.69%가 되는 미국이나, 0.25%가 되는 싱가포르를 볼 때 전체 거래액 중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편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 등록된 사업자중에서 실제로 전자상거래(EC)를 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수는 89,000개 정도인데 EC 사업 유형을 보면 기업 대 소비자(B-to-C :

Business to Consumer)가 60%, 기업 대 기업(B-to-B: Business to Business)이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B-to-B가 68%를 차지하는 반면 그 외의 업종에서는 B-to-C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간 거래는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EDI 형태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이 커지고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기업들은 인터넷 기반의 B-to-B를 실현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재구성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2000년도부터 전자상거래의 중심이 B-to-C에서 B-to-B로 전환되었다는 것인데 향후 산업 경쟁력의 핵심부반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97년 5월에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그해 8월에 “전자상거래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그리고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선정해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교육, 기술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고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거래 서명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2001

1) 최근에는 전자상거래(e-commerce)보다는 e-비즈니스(e-business)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e-business라는 용어는 IBM이 최초로 1997년 10월에 사용한 것으로서 WTO 및 미국등의 국가에서는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년부터는 전자거래에 의한 정부조달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했다.

정부는 98년 12월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과제를 1)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전자상거래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세계 등 관련제도 개선), 2)인프라구축(인력 및 정보제공 기반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통신망의 고도화 및 편리한 정보통신 이용 환경 조성), 3)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초기 수요 활성화(B-to-B시범사업추진, 국내사이버몰의 육성), 4)국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인터넷을 통한 무역지원 강화, 다자간 양자간 협력관계 강화)으로 정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었으나 이때의 추진계획중 일부 사업만이 추진되어 왔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는 등 향후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조류에 적응해 나가지 못하면 기업은 물론 국가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감과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수용체제가 취약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내지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사고가 미흡하다는 점이 작용해서 2000년 2월 15일 범정부적으로 “전자상거래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표 2>와 같이 5대 중점시책, 40개 세부과제를 추진중에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사이버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반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이용시 편리한 환경을 제공키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상

거래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 그리고 사이버무역 기반조성등 5대 중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확산”시책은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business process(부품의 조달, 생산, 물류 및 판매)를 가지고 있는 전자 및 자동차등 핵심산업의 유통구조를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경쟁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 자동차, 철강, 섬유등 8개의 주요 산업별 기업간 전자상거래(B-to-B)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전체 산업분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2000-2002년간 총 727.2억원을 투자하고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산업별 전자상거래 추진현황을 보면 전자의 경우는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운영을 맡아 각종 부품정보, 다국어 지원, 해외 전자거래 체계 등의 조기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의 경우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운영을 맡아 인증시스템 및 해외거래 EDI시스템 구축을 보완하며 공동물류시스템, 산업정보 Data Base구축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조선의 경우는 조선기술연구조합이 운영을 맡아 ISP 수립을 완료하고 조선 CALS (Commerce at Light Speed) 전용망구축, 기술정보Data Base 및 전자거래체계 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철강은 한국철강협회가 운영을 맡아 ISP수립을 완료하고 종합D/B, 통합정보공유시스템 및 전자거래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공업의 경우는 한국기계공업진흥

<표 2> 전자상거래활성화 종합대책

	추진계획 및 내용
사이버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제도 정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자금이체 관련 제도 정비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3.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제정.보급 4. 전자거래 분쟁 조정위원회 본격 가동 5.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 전면 시행 6. 암호이용제도 확립 7.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제도확립 8.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정 9. 소비자 보호 지침 10. 전자상거래관련 법규 정비 및 국제규범의 수용 11.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12. 전자상거래 영업환경 개선
전자상거래 인프라 지속 확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2.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 3. 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 4.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5.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6. 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기반조성 및 혁신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가속화 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부문 전자 조달 조기 구축 2. 공기업의 전자 조달 체제 확산 유도 3. 조달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
산업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범산업 확대 및 지원 강화 2.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종합추진단 구성.운영 3. 산업별 전자상거래 본격 추진 4. 기업간 전자상거래 확산 붐 조성 5. 경쟁력 있는 기존 유통채널의 전자상거래화 촉진 6. 자율적이고 원활한 업종전환 지원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 지원법령으로 개정 2. 사이버무역 단계별 지원시책 추진 3. 무역.통관업무의 전자문서(EDI)화 확대 4. 사이버무역 지원사업 추진 5.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 자료 : 이창한, 전자상거래의 국제동향과 정책방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2001년 3월, P15.

회에서 운영을 맡아 ISP 수립을 완료하고 설계정보교환 및 제품개발시스템을 구축하며 통합조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섬유, 전력 및 유통은 신규추가 산업으로서 D/B 및 EDI시스템 등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2000년 이후의 세계적 추세인 기업간 전자상거래(B-to-B) 중심의 Internet Business에 대한 전략과 모델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무역 기반 조성”시책은 서류와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없다는 사이버무역의 속성상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으로 해서 세계적 추세인 전자상거래 시대에 한국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이버무역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는 정부의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사이버무역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투자능력 및 경영자의 인식부족으로 그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의 사이버무역 여건조성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또한 전국적인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15개로 확충, 지방중소기업의 사이버무역 자원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2.2 국외 환경변화

2.2.1 WTO뉴라운드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무역장벽의 완화와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 Nation Treatment)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세계무역확대를 기하고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1947년에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세계경제가 2차례의 석유파동을 겪는 등 어려워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몇몇 국가들이 GATT의 규정을 남용하거나 위배하는 수입규제 등의 조치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나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등 이른바 회색지대 조치(Grey Area Measures)가 난무함으로써 각국에서 보호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국가간 통상마찰이 심화되자 이러한 보호주의 성향을 타파하고, GATT체제 밖에서 각종의 관세 비관세 장벽이 부과되었던 농산물과 섬유도 관세로 단일화해서 GATT체제로 끌어들이고 무역장벽을 낮추고, GATT체제 탄생시보다 국제무역 비중이 커진 통신, 금융, 운송 등의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분야도 GATT체제 내에서 국제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8회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탄생시켰다.

WTO는 GATT체제보다는 더욱 국제무역장벽을 완화해 전 세계를 국경없는 단일 시장화 했다. 그러나 8차에 걸친 7년간의 지리한 협상이었지만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WTO체제 탄생후 추가협상키로 한 미결과제(Built-in-Agenda)²⁾에 대한 합의안 도출과

2) 미결과제(Built-in-Agenda)에는 반덤핑(기존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 및 우회덤핑방지규범에 대한제정), 농산물(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추가감축 내지는 폐지와 관세의 추가인하), 공산품 시장접근(공산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인하 및 기존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한 투명성제고), 서비스(서비

그 이후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통상이슈³⁾에 대한 논의 및 규범 확립이라는 2가지 현안 해결의 필요성에 의해서 뉴라운드 출범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WTO 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The Second WTO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폭넓은 분야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그 주요 의제는 앞에서 언급한 5가지 미결과제(Built-in-Agenda)와 5가지 새로운 통상이슈인데 이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5가지 새로운 통상이슈중 하나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 WTO 각료회의의 결과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제까지의 무관세 관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 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⁴⁾을 채택하는 것이었다. 이 회의

스시장의 추가 자유화) 및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보장강화)등이 있다.

3) 새로운 통상이슈에는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환경문제, 투자 및 지역주의 문제 등이 있다.

4) 제2차 WTO 각료회의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언문 전문(全文)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Declare that: The General Council shall, by its next meeting in special session, establish a comprehensive work programme to examine all trade-related issues relating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including those issues identified by Members. The work programme will involve the relevant World Trade Organization(WTO)bodies,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 financial, and development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recognize that work is also being undertaken in other international fora. The General Council should produce a report on the progress of the work programme and any recommendations for

결정 내용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포괄적 연구 계획표(work programme)를 수립하고 1999년 3월까지 일반이사회에 연구계획표의 진척사항을 보고해서 99년 7월까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계획표를 마무리지어서 이를 토대로 미국 시애틀에서 1999년 11월 30일에 열리는 제3차 WTO 각료회의(The Third WTO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네바에서 있었던 제2차 WTO 각료회의 이후 1년반 동안의 뉴라운드 협상준비 작업을 진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99년 11월 30일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제3차 WTO 각료회의는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데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뉴라운드를 지지하는 국가들간에도 뉴라운드에서 협상할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각종 의무만 지게 됐다고 판단한 개도국들이 뉴라운드를 시작하는데 반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화를 주장하는 반면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도 있어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4차 WTO 각료회의시까지 무관세화 원칙을 고수하고 기존의 연구계획표에 대한 연구를

action to be submitted at our third session. Without prejudice to the outcome of the work programme 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under the WTO Agreements, we also declare that Members will continue their current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transmissions. When reporting to our third session, the General Council will review this declaration, the extension of which will be decided by consensus, taking into account the progress of the work programme.

계속해 2001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Qatar의 Doha에서 열리는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미국은 기존의 GATS⁵⁾와 전자상거래를 구별해서 협정에 임하려고 하는 반면 EU국가들은 전자상거래를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시켜 GATS와 연관지어 의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협정체계에 전자상거래를 포함시키기보다는 별도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미국의 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2.2.2. OECD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전자상거래를 앞서 서론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곧 기업간 거래중에서 open network를 활용하는 웹 사이트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 및 인터넷경유의 E-mail을 이용한 거래와 기업 대 소비자간의 거래중에서 open network를 활용하는 웹 사이트상에서의 인터넷쇼핑 및 인터넷을 경유한 온라인 banking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한정하는 것이다. OECD는 전자상거래를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최대화하고 또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오면서 초기에는 정보이동의 자유와 개인 정보보호 등에 초점을 두었으나 근래에는 상업활동의 유용성과 경제질서 등으로 그 관심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OECD가 지금까지 제시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권고 및 선언으로서 다음의 8가지가 있다: i)OECD협약(1960년 12월), ii)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1980년), iii)정보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1992년), iv)암호화정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1997년), v)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OECD 각료선언(1998년), vi)범세계적 네트워크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OECD 각료선언(1998년), vii)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에 관한 OECD 각료선언(1998), viii)전자상거래하에서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1999년 12월 9일).

이들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해보면, OECD의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ICCP)는 1997년 3월 "암호화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에게 암호화 정책의 8가지 기본원칙을 권고해서 사생활 보호수단의 기초를 마

5) WTO는 인터넷상의 거래가 가능한 제품중에서 책과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제품분류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상의 거래는 GATS에서 다루어지는 서비스로 보고 있다. WTO는 인터넷상의 거래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그 첫째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로서 상품의 선정에서부터 구매 및 인도의 전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것(transactions for a service which is completed entirely on the Internet from selection to purchase and delivery)이고 둘째는 재화는 재화든 서비스이든간에 어떤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 선정되고 구매되어지지만 전례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분배서비스를 포함하는 거래(transactions involving "distribution services" in which a product, whether a good or a service, is selected and purchased on-line but delivered by conventional means)이고, 셋째는 인터넷 서비스규정에 포함된 텔레커뮤니케이션 운송기능을 포함하는 거래(transactions involving the telecommunication transport function, including provision of internet services)이다.

련하였고, 1998년 10월에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선언”을 하였는데 소비자 보호 대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전자상거래 환경에 맞추어 법령과 관행을 정비하고, 둘째, 자율규제메카니즘을 개발하며, 셋째,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고, 넷째, 소비자를 교육시키고, 다섯째,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국제거래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법 및 법률 집행기관들의 국제적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회의에서 “법세계적 네트워크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OECD각료선언”도 이루어짐으로써 네트워크상에서의 개인보호에 진일보를 이루었다. 인터넷상의 비대면 상거래시의 거래자간 신원확인과 전자문서상의 의사표시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어려운 문제로 부각됨으로 해서 OECD는 이의 해결책으로 전자서명 기술에 의한 인증제도의 도입방안을 논의해온 결과로 전자서명기술 및 인증메카니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에 관한 OECD각료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1999년 12월에는 OECD 이사회에서 정책권고로서 “전자상거래 환경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이의 내용은 사업자는 어떤 기만, 오도, 사기 및 불공정한 행위에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에 관한 정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⁶⁾를 제공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한 대금지급 메카니즘과 그러한 메카니즘에 적용되는 보안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하고, 기업 대 소비자간 국제거래는 그것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달리 이루어지는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기준의 틀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2001년 1월에 UAE의 Dubai에서 열린 전자상거래에 관한 Global Forum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관해 전통적인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지역간 불공정 조세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조세당국간 협력 및 조정이 필요하며, 법세계적 차원의 지적재산권구축, 전자도서관 및 사이버교육의 추진등이 논의되었다. 향후 OECD는 직접세와 관련해서는 웹서버의 고정사업장 소득의 귀속 문제, 거주지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사업장 개념의 정립을 서두를 것이며,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자동징수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업내부와 기업간 전자상거래(B-to-B)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사용촉진을 위한 정책검토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 진다.

2.2.3 UNCITRAL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1966년 유엔총회에서 만들어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는 국제무역에 적용되는 각국의 법률상 불일치가 국제무역의 흐름에 장애가 되어 왔다고 인식하여 이의 시정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근래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1987년에 전자자금대체에 관한

6)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자신의 신원에 관한 정보의 종류로는 첫째, 사업자의 법적 이름 및 거래시 사용하는 이름, 둘째, 사업자의 주요 소재지, 셋째, 전자우편 주소 및 기타 전자적 접촉 수단 혹은 전화번호, 넷째, 등록을 위해 사용했던 주소, 다섯째, 정부의 등록 및 허가 번호등이 있다.

UNCITRAL의 법적 가이드(UNCITRAL 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s Transfers)를 제시함으로써 전자적인 방법(electronic means)에 의한 자금의 이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1992년에는 국제신용대체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을 제시해서 국가간 전자자금 이체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으며, 1996년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만들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게는 그 제정을 위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미 이와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는 각국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자국의 법률과 그 집행을 평가하고 현실화하는데 하나의 규범(model)을 제시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이 모델법은 어떤 특정국가가 국내수준에서 불충분한 법 제정으로 인해서 국제무역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 적용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적 국경개념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가지는 국내성은 물론 국제성에 맞게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 법은 모두 2부 17개조 및 법률조항에 대한 가이드(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이 최근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열림)에서 논의되었던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의 근간이자 이제까지 적용되어 오고 있는 각국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골격을 제시해주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적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그 적용범위를 상사적(commercial)⁷⁾ 활동에 관하여 사용되는 데이터메시지 형태의 모든 정보에 한정함으로써 소비자거래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OECD가 소비자거래 및 그 보호에 이제까지 치중해 왔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며 보완적 의미를 갖는다. 데이터메시지에 대한 법적 요건을 제시했고 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행위 및 운송서류의 기준도 제시해 주고 있다.

상기의 모델법이 제정된 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다 확실한 모델법을 제정키 위해 동 위원회 산하에 있는 Working Group IV에서 그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오면서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렸던 34차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에 드디어 전자서명에 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제정을 위한 초안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현실 환경에 맞는 모델법을 만들기 위해 Working Group들의 보고를 받았다. 전자서명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에서는 전자서명이란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해

7) 원문에서는 상사적(commercial)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상사적(commercial)이라는 용어는 계약상의 것이든 아니든간에 상사적 성격의 모든 관계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규율하도록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상사적 성격의 관계는 다음의 거래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교환을 위한 무역거래, 배급계약, 당사대표 또는 대리, 팩토링, 리스, 도급, 자문, 엔지니어링, 라이선싱, 투자, 파이낸싱, 은행업무, 보험, 개발계약 또는 허가, 합작투자 및 기타 형태의 산업적 또는 사업적 협력, 항공·해상 또는 육상에 의한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

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또한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메시지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전자형태상의 데이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그 적용범위를 “전자서명이 상사적 활동의 정황(context of commercial activities)에 사용되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시하면서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어떤 법규범도 유린하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소비자거래를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이 법은 전자서명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효력문제에 관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법적 태두리를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고자 각국에서 제정한 법규범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범을 만들어 각 국들이 이를 활용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1996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에 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과 더불어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기본틀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orking Group IV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다.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렸던 34차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유럽경제위원회의 CEFAC T⁸⁾(Center for the Facilitation of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의 권고안들과 보조를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한 예로 국제무역에서 전례적으로 쓰여졌던 “writing”, “signature”, 그리고 “document”라는 용어가 전자적으로도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한다는 CEFAC의 안을 유엔사무국이 Working Group에 의뢰해 온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UNCITRAL은 OECD 및 WTO와도 공조를 유지하고자 Working Group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향후 UNCITRAL은 전자적인 계약(electronic contracting)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법적장벽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하고, 둘째, 유형상품(tangible goods)의 선취특권(security interest)의 창출이나 이전행위(acts of transfer)에 대한 기록을 공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이나 메카니즘에 의해서 유형상품의 권리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검토를 하고, 셋째, 온라인상의 중재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정(UNCITRAL Arbitration Rules)과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연구하는 것이다.

3. BOLERO SYSTEM의 역할

전례적인 방법에 의한 국제무역이 물류적, 금융적 및 시간적 차원에서 비효율성이 상존해 있어 각 기업들에게는 많은 비용부담을 주어 왔다. 또한 근래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도 현물인도와

8) 이것은 유럽경제위원회의 무역촉진 및 전자상거래 센터(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로 현재 명칭이 변경되어 있다.

<표 3> 전자선화증권의 도입 사례

내용 유형	키방식의 유형과 양도가능 여부	등록 시스템 유형	유통성 절차
Reinskou	별도의 키 없음	운송인 등록 시스템	매도인이 매매사실을 운송인에게 통지. 운송 인은 양수인을 신소지인으로 등록하고 이 사 실을 양수인에게 확인
SeaDocs	PIN 또는 Test Key, 양도가능	중앙등록기관	송화인이 운송인의 자회사에 양수인의 성명 을 통지하고 양수인에게 자신의 테스트키를 제공. 운송인의 자회사는 송화인과 양수인의 메시지를 점검하여 일치하면 양수인을 신소 지인으로 등록
CMI	개인키, 양도불가	운송인 등록 시스템	운송인에게 양도메시지를 전송하고 운송인은 그 내용을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수락하 면 신개인키를 교부하고 신소지인으로 등록 함으로써 양도가 이루어짐
NCITD	IAC, 양도불가	운송인 등록 기관 또는 중 앙등록기관	관리기관을 통하여 전자배서를 행하고 관리 기관이 수화인에게 전자선화증권을 교부
BIMCO	Digital Signature, 양도 가능	중앙등록기관	송화인의 양도메시지를 관리기관에 전송하고 관리기관이 양수인에게 수취메시지를 전송한 다. 양수인이 이를 수락하면 양도완료

자료 : 최석범,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본질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0. 6,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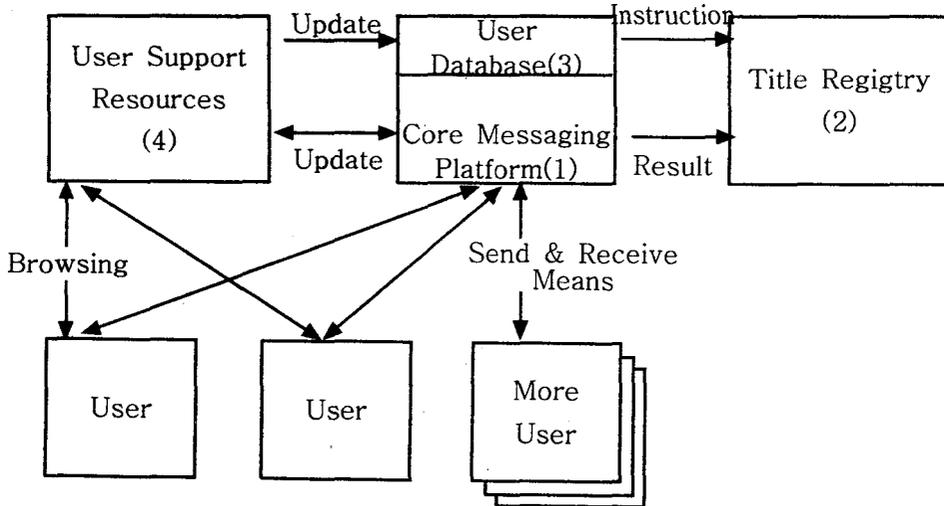
대금결제의 시차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던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대금 회수와 약정물품의 인도를 확실히 해주는 동시에 전례적인 의미의 서류(선화증권⁹⁾(B/L: Bill of Lading) 포함)와 데이터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교환되도록 함으로써 시간적, 금융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독립적 보장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해서 1998년에 탄생한 것이 Bolero International Ltd.¹⁰⁾이며, 이 회사가 웹 기반에 구축한 시스템의 상표는 bolero.net이다. 무역서류 전자화의 시도¹¹⁾는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Bolero System이외에도 있지만 Bolero System이 완결판의 의미를 갖

9) 전례적으로 선화증권(B/L)은 CFR(Cost and Freight) 및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조건하에서 매도인에 의해서 제출되는 유일한 수리 가능한 서류로서 선화증권은 첫째, 본선상업으로의 물품인도의 증명, 둘째, 운송계약의 증거, 셋째, 종이에 의한 서류의 이전에 의해서 다른 당사자에게 운송중의 물품에 대해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수단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10) 세계은행간 금융전산망협회(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와 직통운송상호보험협회사(Through Transport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td.)가 합작·설립한 회사이다.



<그림 1> Bolero System의 구성요소간 정보유통도

자료 : 채진익, '사이버무역에 있어서 Bolero System상 Bolero B/L의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1, 2, P.7.

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세계의 500여개 기업¹²⁾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데 Bolero System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들이 무역서류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개방적이고도 중립적인 시스템으로서 무역서류 및 각종 데이터의 안전한 인도를 보증하며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이의 이전을 승인 및 보증하는 시스템으로서 그 구성요소간(構成要素間)의 정보유통도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Bolero System의 운영구조를 보면, 첫째, Core Messaging Platform은 Bolero System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전자적인 무역서류를 인터넷을 경유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디지털 서명 및 암호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종이서류보다 더 보안성이 유지된다. 둘째, Title Registry는 전례적인 선화증권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Bolero 선화증권에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생성시키고 온라인상에서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무역서류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User Database는 Bolero System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넷째, User Support Resources는 온라인 정보와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체이다. 이들의 전자적인 연결망으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지역 컴퓨터장치로 Bolero

11) 국제해법회(CMI)에서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을 제정하면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왔으며 Bolero System은 그 중의 하나로서 유럽에서 추진되었다. 국제해법회(CMI)는 거의 80년이나 된 해상운송에 관한 1924 헤이그 규칙(1924 Hague Rules)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 안은 전자상거래부문도 반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12) Financial Times는 2001년 8월 27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포항제철과 일본 제1일의 Nippon Steel도 이 체계를 활용하기로 계약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ystem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속성, 저비용 및 효율성을 제공하는 Bolero System상의 무역거래의 법적준거는 Bolero Rulebook¹³⁾인데 이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독점적인 재판관할권은 영국법원이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Bolero System이 기존의 종이서류에 의한 기업간(B-to-B) 무역방식을 Bolero 전자선화증권¹⁴⁾으로 대체해서 온라인상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13) Bolero Rulebook은 Bolero System 사용자에게는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의 조항과 Bolero System상의 각종 운송계약상의 조항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국제협약 또는 관련 국내법 조항이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14) 선화증권에 대해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2000(INCOTERMS 2000: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0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선화증권의 특수한 법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NCOTERMS1990은 이와 같은 예상되는 발전을 이미 수용하였다. 그 A8조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통신할 것에 합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는 전자적 메시지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한 메시지는 관계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다. 제3자에 의해서 유용하게 제공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하나는 연속적인 소지인의 등록이다. Bolero 서비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1990년 전자식 선화증권을 위한 CMI규칙이나 1996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모델법의 제16-17조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적절한 법적규범 및 원칙에 의한 더 많은 지지를 필요로 할 수 있는 것이다.

4. 기업의 대응

국내 및 국제동향과 관련해서 기업은 각 국제기구별 국제규범화 논의 동향과 국내의 움직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정보를 확보해서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앞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국내의 환경적 변화는 전자상거래를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전자상거래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사이버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자금결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세계상의 지원을 검토하고,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2001년부터 산업단지별 사이버 공동수배송지원시스템과 공동물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온라인(on-line) 및 오프라인(off-line)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서 전자상거래시대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무역통관시스템을 연계한 범아시아 전자무역네트워크를 통한 paperless trade구현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촉진을 위해 국내의 상거래를 규율하는 법체계와 국가간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과는 구별해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시도하거나 시도해 온 기업들은 이러한 법체계에 대한 통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국외환경변화를 보면 WTO에서는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85%를 차지하는 미국의 주장대로 일단 2001년 11월에 개최되는 제4차 WTO 각료회의시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화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으며, OECD에서

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에 관한 각료선언, 암호화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제시 및 제반 법체제정비를 준비하고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B-to-B E-Commerce)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향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을 제정해서 각국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향후 전자적인 계약을 판장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추진하며 유형상품의 선취특권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온라인 상의 중재를 위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정을 검토하는 등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활동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전자상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표명이다.

또한 Bolero System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들이 무역서류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중립적인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종이서류에 의한 기업간 무역방식을 Bolero 전자선화증권으로 대체해서 온라인상에서 거래, 특히 사이버무역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4.1 오프라인 기업의 대응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오프라인 기업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라인 기업은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전자상거래에 빠른 시일내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고객의 확보, 브랜드 이미지 및 수입의 창출 등을 위해서 상당한 마케팅 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한 예로 슈퍼마켓의 경우, 94년 중반에는 20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95년도에는 200만 달러, 96년엔 2000만 달러 98년에는 2억 달러를 투자해야 10대 웹사이트¹⁵⁾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낡은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혁신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풍토상 현존하는 조직과 문화속에서는 어렵고 새로운 별도의 조직 예를 들면 계열사를 두어 전자상거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제무역시 Bolero System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Web EDI 또는 Internet EDI체계를 각 기업들은 갖추어야 하며 특히 기업 경영전략과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은 EDI를 활용해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일상적인 서류업무 및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신속한 정보활용으로 주문처리, 계획수립 능력 및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거래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올릴 수 있으며 산업표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Bolero System을 활용해서 사이버무역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역전된 시장(Reverse Market)¹⁶⁾에 대처하는 새로운 마케팅, 즉 전자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여러 기업을 연결시켜서 고객들(잠재적 구매고객으로서의 기업도 포함)에게 보

15) 전국경제인 연합회, 성공적인 전자상거래 사업 구축전략, 1999년 12월, P11-12.

16)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판매자가 구매자를 찾아 내고 상품을 판매하던 패턴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아내서 자신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고 구매하는 양상으로 바뀐 시장구조를 의미한다.

다 많은 내용을 제공하는 소위 Collaboration Marketing이 필요하다. 전통산업에서는 고정 자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고객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구체적인 매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유통채널간의 마찰, 즉, 기존 대리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대리점과 연결¹⁷⁾시켜주는 등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오프라인 기업이 실물시장에서 보유했던 기존의 인지도 및 특성을 살려서 전자상거래시 상품을 구성하고 전자상거래가 정착될 때까지는 실물시장에서의 거래도 병행해야 한다. 단번에 전자상거래로만의 전환은 기존의 장점을 포기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여섯째, 기업간 또는 산업간 정보공유 내지는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도 추진¹⁸⁾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공급체인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구매 및 공급관리(e-PSM: Purchasing and Supply Management), 공유된 R&D관리(SRM: Shared R&D Management), 통합된 고객관리(ICM: Integrated Customer Management)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 온라인 기업의 대응

첫째, 온라인 기업은 소량 다종생산체제를 갖추어 실물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없었던 만큼 전자상거래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기업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범세계적 네트워크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OECD자료선언”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B-to-B E-commerce 업체들은 수익원으로 거래수수료라는 확실적인 수익 모델에만 의존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데 특화된 서비스로 특화된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셋째, 광고의 경우에는 포털(portal web site)이나 web site에서의 배너광고형태의 쌍방향적인 광고¹⁹⁾로 고객확보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OECD 가이드라인은 스팸(spam), 즉, 원치않는 광고성 전자우편(unsolicited commercial e-mail) 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규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17) Autobytel이 그 좋은 예이다.

18) 자동차업체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19) 전자상거래에서 밀기(push)식 광고는 생산자가 일반에게 일방적으로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보내는 형태를 말하고, 당기기(pull)식 광고는 생산자가 특정상품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쌍방향 광고는 2가지 방식의 적절한 병합사용을 의미한다.

5. 결 론

인터넷 보급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는 96년에 9천4백7십만명에서 2000년도에는 2억 이상으로 급증했고, 전자상거래 규모도 96년의 5천2백억원에서 2000년에는 57조 5천 6백억을 상회했으며, 2005년에는 5천조원이라고 하는 천문화적인 수치에 이르게 된다

2000년대에 들어 오면서 전자상거래는 기업 대 소비자(B-to-C)간의 거래에서 기업 대 기업(B-to-B)간 거래로 그 형태가 바뀌어 가고, Bolero System에 의해서 전자선화증권(B/L: Bill of Lading)방식에 의해 기존의 종이서류를 대체하는 효율적이고도 중립적인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고, OECD는 B-to-C에 대한 이제까지의 규율에서 향후에는 B-to-B에 대한 규율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및 법적 적용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을 제정해서 각국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향후 전자적인 계약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추진하는 등 시장환경이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상거래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사이버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2001년부터 산업단지별 사이버 공동수배 송지원시스템과 공동물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온라인(on-line) 및 오프라인(off-line) 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해서 전자상거래시대의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하며,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무역통관시스템을 연계한 범아시아 전자 무역네트워크를 통한 paperless trade구현방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 기업은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전자상거래에 빠른 시일내에 진출해야 할 것이며 Web EDI 또는 Internet EDI체계를 갖추고 기업 경영전략과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경쟁력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이버무역을 위해 Bolero System의 활용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 기업은 실물시장에서 보유하고 왔던 기존의 인지도 및 특성을 살려서 전자상거래시 상품을 구성하고 전자상거래가 정착될 때까지는 실물시장에서의 거래도 병행해야 하며 국제무역시 Bolero System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기업은 소량 다종생산체제를 갖추어 실물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없었던 만큼 전자상거래에서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기업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세계적 네트워크 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OECD각료선언”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B-to-B E-commerce기업들은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특화된 서비스로 특화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며, 광고의 경우에는 포털(portal web site)이나 web site에서의 배너광고형태의 쌍방향적인 광고로 고객확보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성진,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과제』,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년.
- 고윤승, 사이버무역의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2001년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1년.
- 나도성, 한국무역업체의 사이버무역 구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1년 2월.
- 신일순, 김영산, 박상준, 왕규호, 이형재, 정부연,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와 정책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년, 12월.
- 신일순, 김춘아, 정부연, 이정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전통적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년 12월.
- 신일순, 강임호, 윤석진,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년 6월.
- 설영기, 박현희, WTO 뉴라운드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전망, 『무역학회지』, 제25권 제4호, 2000년 12월.
- 여강빈, 인터넷무역을 이용한 지역산품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1년 2월.
- 어재원,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성과의 결정요인: 인과관계모형, 『무역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1년 2월.
- 이창한, 「e-비즈니스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2001년 3월.
- 조태식, 「전자상거래의 진전과 대응과제」, 한국은행 조사국, 1999년, 12월.
- 채진익, 사이버무역에 있어서 Bolero System상 Bolero B/L의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1년 2월.
- 최석범, 글로벌전자무역시대에서의 전자신용장의 본질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0년 6월.
- BOLERO, A Guide on the Role of Digital Signatures in the Bolero System, <http://www.bolero.net/decision/legal>.
- BOLERO, Legal Aspects of Bolero Bill of Lading, <http://www.bolero.net/decision/legal>.
- BOLERO, The Bolero Rule Book, <http://www.boleroassociation.org/dow-docs.htm>.
- John Hagel III, Building Successful E-Businesses: The Senior Management Agenda; 성공적인 전자상거래사업 구축전략, 전국경제인 연합회, 1999년 12월.
- OECD,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Dec. 9, 1999.
- UNCITRAL, An Introduction to the Work of UNCITRAL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UNCITR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Its Thirty-eighth Session(<http://www.uncitral.org/en-index.htm>).

UNCITR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Thirty-seventh Session(<http://www.uncitral.org/en-index.htm>).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http://www.uncitral.org/english/texts/electcom/ml-ecomm.htm>).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Thirty-fourth Session, Vienna, June 25-July 13, 2001(<http://www.uncitral.org/en-index.htm>).

<http://www.ecmc.or.kr/data/frame-01.htm>

<http://www.mofat.go.kr/search.asp>

<http://www.elogiplus.com/san-info/san-ec-02.htm>

<http://www.mofat.go.kr/main/top.html>

<http://www.kait.or.kr>

저자소개

최원익 (e-mail: wonichoi@hanbat.ac.kr)

경희대학교 경영학사

Western Illinois University 경영학석사

Purdue University 경제학석사

Purdue University 경제학박사

경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학기제)교수

현: 한밭대학교 경제과 시간강사